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복지용구사업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설 이용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조(노인인권의 정의)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노인학대의 정의)“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제4조(노인학대 특성)지속성,복합성,반복성,은폐성

제5조(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라 금지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3.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소홀히하는 방임행위
-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조(노인학대 유형)

- 1.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2.정서적 학대: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을 비웃는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가족관계에서 노인을 소외시킨다.

-노인의 일에 타인이 개입하여 결정한다.

3.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입맞춤,애무 등을 요구한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4.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방해 하는 행위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공적 부조(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5.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 또는 환경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않거나 중단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욕창,염증 등 발생)

6.자기방임:노인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비의도적으

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생활,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위협 받는다.

7.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낮선 장소에 버린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제7조(노인학대 처벌규정)

1.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 행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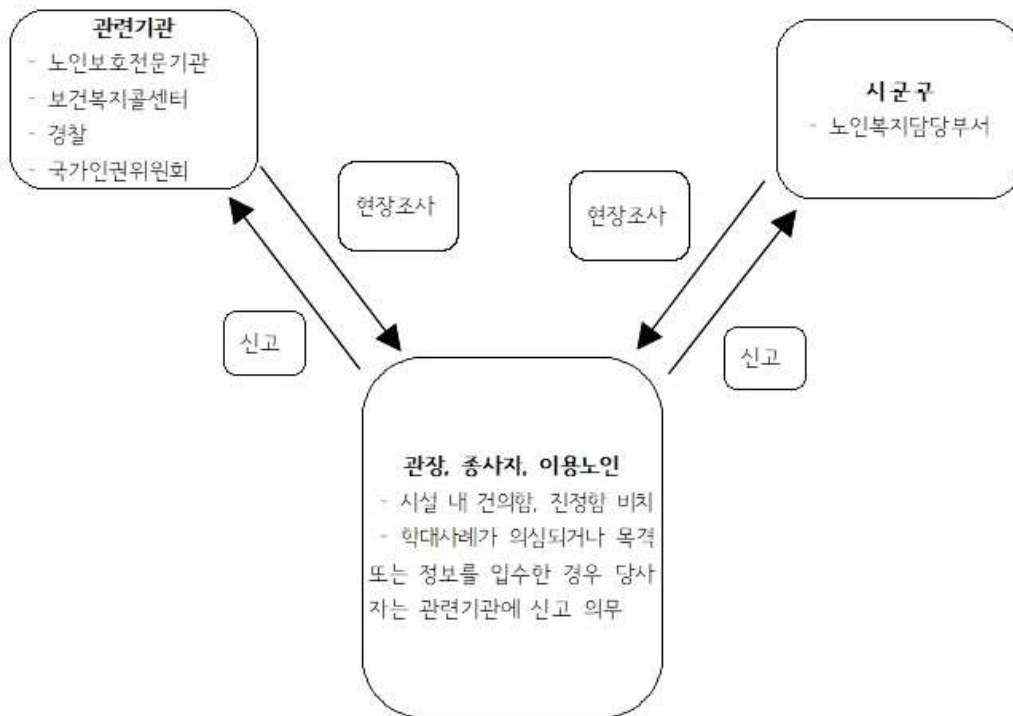
2.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제8조(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복지용구사업소 관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 1.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 2.노인인권(권리,자살 등)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에 연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3.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보호,인권 및 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4.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부장 또는 관장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내부 규정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이를 알거나 목격하였을 경우,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논의 후 결과(신고,내부 규정)를 조치해야 한다.
- 6.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뜯,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7.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노인학대 처리절차)



제10조(관련기관 전화번호 안내)

-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02-3667-1389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경찰 ☎ 112
- * 국가인권위원회 ☎ 02-2125-9700